

1. 개정이유

술 품질인증 위반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시정명령) 시정명령 방식 및 사항을 규정* (제18조의2)

* 서면방식, 대상이되는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 등

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정)

1) (표시 위반) 1회 위반 시 30일 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표시를 변경하거나 위반한 표시를 제거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2) (광고 위반) 1회 위반 시 10일 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중단·삭제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을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및 시정 명령의 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령”을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술 또는 광고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근거 법조문
3. 시정하여야 할 사항과 시정방법
4. 시정기간
5.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는 사실

제20조제3호 중 “변경·사용정지 명령”을 “변경·사용정지 및 시정명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시정기간은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호라목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포장재의 제작·교체, 유통 중인 제품의 표시 변경,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기간의 연장신청은 당초 시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표시 사용정지 6개월
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표시 변경	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3개월
다.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2개월	표시 사용정지 4개월	표시 사용정지 8개월
라.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법 제28조제2항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인증을 받은 내용에 맞게 표시를 변경하거나 해당 표시를 제거할 것(30일)		
마. 품질인증을 받는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법 제28조제2항	시정명령: 인증을 받은 내용에 맞게 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중단·삭제할 것(10일)	시정명령	시정명령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u>표시의 변경 · 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u>)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 사용정지 <u>명령</u> 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u>표시의 변경 · 사용정지 및 시정 명령의 처분기준</u>) ① ----- ----- ---- <u>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u>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u>시정명령</u>) <u>시정명령은 서면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u> 1. <u>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술 또는 광고</u> 2. <u>위반행위의 내용 및 근거 법 조문</u> 3. <u>시정하여야 할 사항과 시정 방법</u> 4. <u>시정기간</u> 5. <u>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는 사실</u>
제20조(<u>규제의 재검토</u>)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제20조(<u>규제의 재검토</u>) ----- ----- -----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 른 표시의 <u>변경·사용정지 명 령</u>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 일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변경·사용정지 및 시정명령</u>----- --
--	---